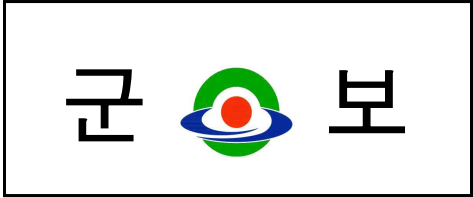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662호 2025. 11. 6.(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고 시

○하천점용 변경 허가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5-136호)

공 고

○예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5-1492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71)

하천점용 **변경**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법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6일

예 천 군 수 (인)



구 분	하천점용 변경 허가
하 천 명	복계천(지방하천)
점 용 자 주 소	예천군수(안전재난과장)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위 치	당초) 예천군 용궁면 읍부리 6-4번지 외 3필지 변경) 예천군 용궁면 읍부리 6-4번지 외 10필지
점용면적	당초) 일시 : 364㎡, 영구 : 270㎡ 변경) 일시 : 2,389㎡, 영구 : 1,843㎡
점용목적	공작물의 설치
사업개요	읍부펌프장 토출관로 설치 및 보호시설 (호안, 하상보호공) 설치
점용기간	일시 : 2025년 01월 06일 ~ 2027년 12월 31일 영구 : 2025년 01월 06일 ~ 영구

예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예 천



1. 조례명 : 예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예천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학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화학사고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책무,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등(안 제1조 ~ 제4조)
- 나.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안 제5조~제14조)
- 다.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화학사고발생 시의 주민고지, 화학물질 배출 저감계획 점검, 교육·훈련, 재정 지원(안 제15조 ~ 제19조)

4. 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환경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 1) 전자우편(이메일) : argon0623@korea.kr
-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 3) 팩스 : 054-650-618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환경관리과(전화 : 054-650-69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천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예천군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예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화학안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시행계획은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

전관리 시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 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예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군수는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경상북도지사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예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예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제13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
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화학물질 관리 업무분야 담당 과장

나. 재난·안전관리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예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화학·환경·보건·안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예천소방서장, 예천경찰서장이 추천하는 소방 및 경찰공무원

마.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
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이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으로 위원회 활동에 피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제6조 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

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천군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군수는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주요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예천군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 대응정보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15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 요령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 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 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 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 방법
5.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대피장소의 지정요건 및 절차, 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 방법
6. 화학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군수가 정한 사항

③ 군수는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군 누리집에 게재할 수 있다.

제17조(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점검) ① 군수는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이행점검을 위하여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이행점검을 위하여 사업장을 출입할 때 전문적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가

를 대동할 수 있다.

제18조(교육·훈련) ① 군수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군 소속 공무원에게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고대비물질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재정 지원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2.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